

2023년 국가혁신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에 따라 전라북도 특화산업 성장거점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분야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맞춤형 지원으로 제품의 상용화 촉진 및 성과 확산

□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지원항목	대상	지원 금액
프리프로덕션	- 전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 및 기관 - 전라북도 소재 대학	건당 최대 12백만원
수요맞춤형	- 전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	건당 최대 20백만원
총 합		최대 356백만원

- 지원규모 : 356백만원 이내(2종/19건)
- 지원대상
 - 전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1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 및 기관(※ 3.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확인 필수)
 - 전라북도 소재 대학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3. 5. 24.(수) ~ 6. 14.(수)
- 접수기간 : 2023. 5. 24.(수) ~ 6. 14.(수) 18:00까지

2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3. 11. 10.(금)

□ 세부내용

- 프리프로덕션, 수요맞춤형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 신청 불가)

구 분	세부내용	지원금액	추진체계
프리 프로덕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R&D 및 비R&D 사업 수주를 위한 사전기획 지원 - 기업(기관)간 컨소시엄 형태로 아이디어 사업화 패키지 지원 - 신기술 시장성·사업성 분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전략, 비즈니스모델개발 등 사전기획 지원 <p>* 사업 신청 시 목표로 하는 정부사업 기입 필수</p>	최대 12백만원	컨소시엄 (주관+참여) 구성 필수
수요맞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역량강화 및 국내외 시장확대를 위한 메뉴판 선택형 지원 - 권리화 지원, 실용화 지원, 상용화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최대 20백만원 (VAT 별도, 기업부담금 -현금, 10%)	단독신청 (공급기업 견적서 첨부)

- 수요맞춤형의 경우, 기업 매출규모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
 - 유형1: 1~10지원 가능, 유형2: 3~10지원 가능, 유형3: 8~10지원 가능

구 분			프로그램 구성	
[유형 1] (’22 매출액 50억원 이상)	[유형 2] (’22 매출액 20~50억원)	핵심기술 고도화	1	국내 발명 / 실용신안 특허출원
			2	해외 발명 특허출원 (PCT포함)
	[유형 2]	맞춤형 기술/시장 역량강화	3	제품 다각화 지원 (제형 다양화)
			4	파일럿 테스트 지원 (시제품 양산공정 시험)
			5	공정개선 컨설팅
			6	온라인 마케팅 지원(동영상 제작 등)
			7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지원
	[유형 3] (’22 매출액 20억원 미만)	시장진입, 기술창출	8	인증 취득 컨설팅 및 심사비
			9	해외시장 조사 분석, 컨설팅
			10	선행기술조사 컨설팅 (변리사, 특허조사분석사)

※ 민간부담금(10%)을 포함한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제안(최대 4개)

3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전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기관(※ 기관은 프리프로덕션만 지원 가능)
 - 해당 산업단지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1개 이상 보유하거나 사업기간 이내(~2023. 11. 10.)에 이전 예정인 중소기업 및 기관
 - 프리프로덕션의 경우 주관기업 및 기관만 해당
(※ 참여기업 및 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지 역	산업단지
전주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친환경복합제1산업단지, 전주친환경복합일반산업단지(3-1), 전북혁신도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희망센터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2센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 전주기전대학창업보육센터,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주비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희망전북창업보육센터
완주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1,2단계) 전주과학산업단지,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센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국가산업단지 익산제2,3,4일반산업단지, 익산함열농공단지 원광대학교 ITBT 창업보육센터
군산	군산서수농공단지, 군산임피농공단지 군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호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김제	김제민간육종단지, 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산업단지
고창	고창복분자농공단지
정읍	정읍제2일반산업단지,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순창	순창인계농공단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소공인집적화지원센터
남원	남원노암제3농공단지
진안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기타	전북연구개발특구(전주, 완주, 정읍)

- 전라북도 내 대학(※ 대학은 프리프로덕션만 지원 가능)
-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기관은 프리프로덕션만 지원 가능)
 - 주업종코드가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코드(20개)에 해당되는 기업 및 기관
 - 주업종코드가 아래 코드에 해당되지 않지만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 및 기관(※ 11번 서류 제출 필수 및 적격성 검토 진행)

코 드	산 업
C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C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C10801	배합사료 제조업
C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C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A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C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C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713	과자류 코코아 제품 제조업
C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C10743	장류 제조업
C10751	도시락류 제조업
C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C10792	차류 가공업
C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C20423	화장품 제조업
C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J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 농축수산 생물자원(발효미생물, 기능성소재, 식품 등)을 활용한 산업과 4차산업혁명 핵심 촉매기술(A ICBM*)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실현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창출과 연관된 산업
 - * A ICBM(AI,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 ICT 핵심기술 응용산업과 생물자원의 자체 생산(농작물 재배, 사육 등)·가공 뿐 아니라 생산·가공단계에서 투입되는 유통채널 및 각종 농기계부품,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등과 연관된 산업 포괄
- 즉, 종전에 인식되던 단순 1차 산업이 아닌 2차~3차산업이 결합된 스마트 복합산업(Smart Complex Industry)으로 인식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기관, 참여기업/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공고일 현재 주관기업/기관 및 참여기업/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신청기관 또는 기업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미등재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지원받았거나, 이미 다른 기업의 지원받은 내용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의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
- 주관기업/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지원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전북테크노파크 R&D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rnd.jbtp.or.kr>)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데이터 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입력 완료 요망(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
 - 접수 시 첨부파일에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첨부 필수
- 제출서류

순서	제출서류	프리프로덕션		수요 맞춤형
		주관	참여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필수		필수
2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필수
3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예정)인증서	해당시		해당시
4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각 1부	필수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6	재무제표 및 매출액 확인서 택 1부	해당없음		필수
7	과제참여자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필수		필수
8	견적기업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해당없음		필수
9	견적기업별 날인된 견적서(산출내역) 각 1부	해당없음		필수
10	견적기업별 포트폴리오 각 1부	해당없음		선택
11	특화산업(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관련 기업DB 추가 양식 1부	해당시	해당없음	해당시

※ 4page KSIC 확인 후, 20개 코드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11번 서류 제출 필수

[공통사항]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날인 필수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유효분에 한함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에 주민번호 기입 필수 (수집목적 : 금융권 채무불이행 정보조회)
4. 전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본사 또는 공장,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해당 관련 서류 제출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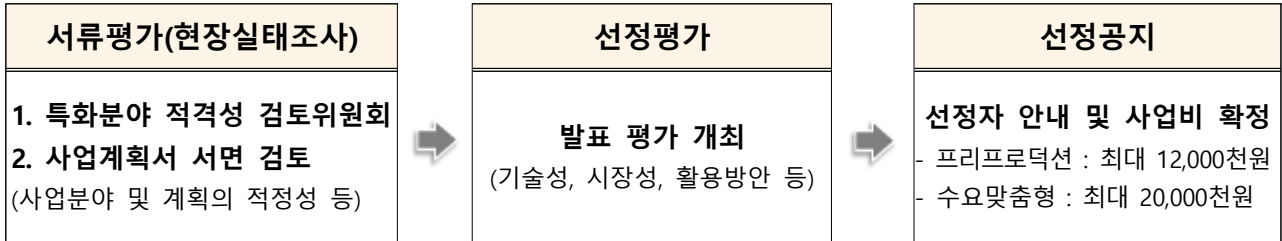
□ 문의처

-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산업융합기획팀 이지은 주임연구원
T)063-219-2290, E)lje0508@jbtp.or.kr

5

평가 및 추진일정

□ 선정평가



※ 필요 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예정

□ 평가지표

○ 프리프로덕션

평가항목	중점 평가항목	배점
목적 및 필요성	목적의 명확성 및 지원 필요성	20점
기술성	차별화 전략 및 구현(실현) 가능성	30점
시장성	경쟁력 확보 방안 및 성과창출 전략	30점
상생 연계 방안	주관·참여 간 상생 연계 방안	10점
예산 집행 계획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점
총 합		100점

※ 평가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수요맞춤형

평가항목	중점 평가항목	배점
목적 및 필요성	목적의 명확성 및 지원 필요성	20점
추진내용	과업 및 산출물의 구체성	30점
활용방안	산출물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30점
기대효과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적 파급력	10점
예산 집행 계획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점
총 합		100점

※ 평가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 고
	프리프로덕션	수요맞춤형	
'23. 5. 24.	사업공고		JBTP 홈페이지
~ '23. 6. 14.	신청접수		전북R&D 종합정보시스템
6월 4주	서류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적격성 검토위원회 및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		신청과제 전체
	선정평가위원회 (공개형 발표평가 진행)		선정평가
	결과 안내		E-mail, SMS
7월 1주	협약체결		TP ↔ 선정기업
	* 민간부담금 없음 * 사업비 선지급	* 민간부담금 입금	
협약일~'23. 11. 10.	사업수행 (협약일~11.10)		선정기업(컨소시엄)
8월~10월 중	진도(현장) 점검		TP → 선정기업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 최종점검 및 회계정산 진행		선정기업 → TP
최종점검 이후	사업비 지급(증빙 후 지출) * 수요맞춤형 사업비 사후지급		TP → 선정기업
과제종료 후 3년간	사후관리 (지원성과 분석 및 홍보, 후속지원연계)		TP → 선정기업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요맞춤형 선정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원가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나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분할 지급 또는 지원금 지급 지연이 있을 수 있음

※ 기업주관 선지급사업(프리프로덕션)의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사업비 지급 예정

6

유의사항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허위 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
 -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는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제재부가금 부과
 -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제재부가금 부과

□ 관련 법령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 요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제 공고기간 중 관련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 기타사항

- 부가세, 관세, 특허청 관납료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의 신청자에 있음